#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대표발의)

| 의 안<br>번 호 | 16089 |
|---|---|

발의연월일 : 2026. 1. 16.

발 의 자 : 이기헌・박해철・박지원
정춘생・최민희・장철민
홍기원・김교흥・김준형
문대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함.

그러나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 안내문, 정책정보 등은 공문서 등에 포함되지 않아, 과도한 외국문자나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의 사용, 비문 등으로 국민이 정부 정책과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문서 등의 정의에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및 제14조제2항).

법률 제 호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를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과 공공기관등의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를 “누리집 등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 4. (생 략)<br>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현수막·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제3조(정의) ----------.<br>1. ~ 4. (현행과 같음)<br>5.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현수막·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과 공공기관등의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br>① (생 략)<br>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br>① (현행과 같음)<br>② ---------- |

| | |
|---|---|
|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br>③ (생 략) | ----------누리집 등에----------.<br><br>③ (현행과 같음) |